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1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외부감사인	대주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< 금감원 원안 >

○ 대주회계법인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□□□
- 직무정지건의 6월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6시간

○ 공인회계사 ■■■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
< 수정심의·의결 >

○ 대주회계법인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□□□
-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2시간

○ 공인회계사 ■■■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대주회계법인 >

○ **감사업무제한 조치위반**

- 공인회계사 □□□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'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' 조치를 부과받았음에도,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본 조치를 위반함

○ **감사업무 관리소홀**

- 감사인은 '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' 조치를 부과받은 공인회계사 □□□를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함

- 담당이사 ■■■은 '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' 조치를 부과받은 공인회계사 □□□를 본인이 담당하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